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33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배준영 · 김석기 · 한지아
조지연 · 김기웅 · 김은혜
이종배 · 이종욱 · 김미애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를 “승인절차,”로, “유효기간에”를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의 승인 기준·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 등에”로 한다.

④ 자동차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이하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 안전튜닝의 승인 기준 .

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 등에--

-.